

#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3월 8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3년3월13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주차사업단장 우의제)

### 제안이유

- 조례 제6조제1항(주차요금 및 가산금)관련 별표1의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을 추가하여 영상문화단지 주차요금을 차종별로 차등 징수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영상문화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 조례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관련 별표2의 제3호 제1종 균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바목 및 사목 제외),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별표2의 제5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제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장 확보비율을 높이므로써 주차난을 완화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6조제1항)
-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1대에서 134평방미터당 1대로 조정함.(안 별표2)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제외)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85평방미터당 1대에서 80평방미터당 1대로함.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1대이상으로 조정함.  
(안 별표2)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	답변
○ 영상문화단지 촬영 셋트장 주차장을 당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것을 민간에 재 위탁한 이유는?	○ 주차장 부지에 불법노점상 등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 위탁한 것임.
○ 재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 시설관리공단 규정 제17조제3항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노점상의 관리 때문에 재 위탁하였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는 노점상을 단속할 수 없는가?	○ 시설관리공단은 단속을 할 수 있는 행정권한이 없어 단속 할 수 없으며, 이용객의 편의나 서비스를 위해 재 위탁한것임.
○ 재 위탁 기간은 몇 년 인가?	○ 1년임.
○ 1년 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 운영 할 수 있는가?	○ 할 수 있음.
○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수익을 올려서 공영주차장 건설등을 할려고 설립을 했음. 수익성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장을 재 위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 위탁 하였음
○ 개정조례안 주차요금을 언제부터 징수하였는가?	○ 금년 3월 1일 부터임.
○ 조례 개정전에 요금징수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가?	○ 주차장부지에 불법노점상 문제가 심각하여 하루라도 빨리 민간에 위탁하여 노점상을 해결하고자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가결되어 시행하게 되었음.

질 의	답 변
○ 주차장 사용료 징수를 반드시 조례 규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고 개정을 위해서는 시의회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의회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가?	○ 잘못된 행정 절차였음.
○ 조례개정전 요금징수 한 것은 환급 해줄 수 있는가? 환급할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가?	○ 환급하기는 어렵고 대책을 검토하겠음.
○ 주차요금의 부과기준은?	○ 노외 공영주차장 2급지 기준임.
○ 1급지로 할 수 없는가?	○ 1급지는 상업지역이며, 3급지는 주거지역이며, 그 외는 2급지 이므로 2급지로 정하였음.
○ 부천시민이 이용할 시에는 30%정도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보는데?	○ 검토하겠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 6. 수정안의 요지

- 붙임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없 음

# 부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106호
의결연월일	2003.3.19 (제103회)

제안년월일 : 2003년 3월 18일

제 안 자 : 건설교통위원장

## 1. 수정이유

- 영상문화단지 주차장의 요금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종량제를 적용하던 것을 정액제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은
- 주차장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조례규정에 근거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이미 조례 개정전에 임의적으로 주차요금을 책정하여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어 이는 위법한 행정 행위 이므로 종전규정대로 하고자함.

## 2. 주요골자

- 조례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1항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은 별표 4와 같다"를 "별표 1과 같다"로 수정

##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중 "별표 1과 같이 하고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은 별표4와 같다."를 "별표 1과 같이 한다."로 한다.

##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 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u>별표 1과 같이 한다.</u></p> <p>②및③ (생략)</p>	<p>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 ----- ----- <u>별표 1과 같이 하고 영상문 화단지 주차장 요금은 별표 4와 같다.</u></p> <p>②및③ (현행과 같음)</p>	<p>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 ----- ----- <u>별표 1과 같이 한다.</u></p> <p>②및③ (개정안과 같음)</p>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주차장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과 같이 한다”를 “별표1과 같이 하고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은 별표 4와 같다”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2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중 제3호 설치기준란중 “150평방미터당”을 “134평방미터당”으로 하고 제5호 설치기준란중 “시설면적 85평방미터당 1대”를 “시설면적 80평방미터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으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별표2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별표4]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표(제6조 관련)

구 분	차 종	요 금
1회요금	승용차, 15인승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3,000원
	15인승이상 25인승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와 2.5톤이상 4.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4,000원
	25인승초과 버스 및 4.5톤 초과 화물 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6,000원

\* 주차요금의 부과기준 및 주차요금 감면은 공영주차장 기준을 적용 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 별표 1과 같이 하고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요금은 별표 4와 같다.												
② 및 ③ (생략)	② 및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별표 2] 부설주차장설치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물</th><th>설치기준</th></tr> </thead> <tbody> <tr> <td>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td><td>시설면적 150m<sup>2</sup>당 1대</td></tr> <tr> <td>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 한다)</td><td>시설면적 85m<sup>2</sup>당 1대</td></tr> </tbody> </table>	시설물	설치기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m <sup>2</sup> 당 1대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 한다)	시설면적 85m <sup>2</sup> 당 1대	<table border="1"> <thead> <tr> <th>시설물</th><th>설치기준</th></tr> </thead> <tbody> <tr> <td>-----</td><td>----- 134m<sup>2</sup>당 —</td></tr> <tr> <td>-----</td><td>시설면적 80m<sup>2</sup>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td></tr> </tbody> </table>	시설물	설치기준	-----	----- 134m <sup>2</sup> 당 —	-----	시설면적 80m <sup>2</sup> 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시설물	설치기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m <sup>2</sup> 당 1대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 한다)	시설면적 85m <sup>2</sup> 당 1대												
시설물	설치기준												
-----	----- 134m <sup>2</sup> 당 —												
-----	시설면적 80m <sup>2</sup> 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												